

法 律 知 識

(협회)

◎ 法律 第3865號

租稅減免規制法中改正法律

租稅減免規制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4條(非課稅利子所得) 다음 各號의 預金·預託金 또는 出資金의 利子 또는 配當金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1. 家計 또는 學生의 貯蓄을 增代시키기 위한 特別預金
2. 農·漁民 또는 相互紐帶를 가진 者를 組合員으로 하는 組合에 대한 1,000萬원이하의 預託金 또는 500萬원 이하의 出資金
第58條의 題目 “(都市 再開發 事業에 대한 讓渡所得稅 등 免除)”를 “(都市再開發區域안의 土地등에 대한 讓渡所得稅等 免除)”로 하고, 同條 第3項중 “第1項第 1條”를 “第1項”으로 한다.

① 都市再開發法에 의한 都市再開發區域안의 土地등을 都市再開發事業施行의 認可日(都市再開發法 第10條 또는 同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施行者로 지정된 경우에는 指定日) 이후 事業施行者에게 讓渡함으로써 발생하는 所得에 대하여는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를 免除한다. 다만, 당해 再開發事業에 公共施設을 水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第62條第5項중 “第60條 및 第63條第1項 但書”

를 “第60條”로 한다.

第63條를 削除한다.

第2章第16節에 第67條의 4 내지 第67條의 8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67條의 4(長期負債住宅에 대한 讓渡所得稅 등 免除)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內國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國民住宅(이에 附屬되는 당해 建物延面積의 2倍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5年이상 負債한 후 讓渡하는 경우에는 당해 住宅(이하 “負債住宅”이라 한다)을 讓渡함으로써 발생하는 所得에 대한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價稅의 100分의 50(10年이상의 경우에는 100分의 100)에 상당하는 稅額을 免除한다.

1. 1985年 1月 1日이후 新築된 住宅
2. 1985年 12月 31日이전에 新築된 共同住宅으로서 1986年 1月 1日 현재 入住된 사실이 없는 住宅

② 所得稅法 第5條第6號(자)目的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 負債住宅은 당해 內國人의 所有住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價稅를 免除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住宅負債에 관한 사항을 申告하고 稅額의 減免申請을 하여야 한다.

④ 第1項에서 規定하는 負債住宅에 대한 負債時間의 計算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

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7條의 6(自耕農民에게 讓渡하는 農地등에 대한 讓渡所得稅 免除) ② 다음 각號에 해당하는 農地·草地·山林地(이하“農地等”이라 한다)를 1986년 12月 31日 현재 所有하는 者가 直系尊·卑屬 또는 兄弟姊妹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自耕農民(이하“自耕農民”이라 한다)에게 그 所有農地등을 1991年 12月 31日 까지 讓渡所得稅를 免除한다.

1. 相續稅法第11條의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農地등

2. 都市計劃法第17條에 規定하는 住居地域·商業地域 및 工業地域외에 所在하는 農地등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耕農民이 讓受하는 農地등으로서 讓渡所得稅의 免除對象이 되는 農地등의 合計面積은 相續稅法第11條의 第1項 各號의 1에 規定하는 規模를 限度로 한다. 이 경우 第67條의 6의 規定에 의하여 贈與稅가 免除된 農地등을 贈與받은 때에는 당해 農地등을 포함하여 計算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讓渡所得稅가 免除되는 農地등을 讓受한 自耕農民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農地등을 讓受한 날로부터 8年이내에 讓渡하거나 당해 農地등에서 직접 營農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農地등에 대한 讓渡所得稅의 免除稅額에 상당하는 금액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計算한 利子相當額을 自耕農民으로부터 所得稅에 加算하여 지체없이 徵收한다.

④ 第1項의 規定은 당해 農地등을 讓受한 自耕農民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申請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適用한다.

第67條의 7(自耕農民이 贈與받는 農地등에 대한 贈與稅 免除) ① 第67條의 6 第1項各號에 해당하는 農地등을 1986年 12月 31日 현재 所有하는 者가 直系尊·卑屬 또는 兄弟姊妹

인 自耕農民에게 그 所有農地등을 1991年 1月 31일까지 贈與하는 경우에는 당해 農地등의 價額에 대한 贈與稅를 免除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耕農民이 贈與받는 農地등으로서 贈與稅의 免除對象이 되는 農地등의 合計面積은 相續稅法 第11條의 3 第1項 各號의 1에 規定하는 規模를 限度로 한다. 이 경우 第67條의 5의 規定에 의하여 讓渡所得稅가 免除된 農地등을 讓受한 때에는 당해 農地등을 포함하여 計算한다.

③ 免除稅額의 徵收 및 免除申請등에 관하여는 第67條의 6 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讓渡所得稅는 贈與稅로 한다.

제67條의 8(營農子女가 贈與받는 農地등에 대한 贈與稅 免除)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自耕하는 農民이 第67條의 6 第1項 各號에 해당하는 農地등을 直系卑屬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營農에 종사하는 1子女(이하 이 條에서 “營農子女”라 한다.)에게 贈與하는 경우에는 당해 農地등의 價額에 대한 贈與稅를 免除한다.

② 免除稅額의 徵收 및 免除申請등에 관하여는 第67條의 6 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讓渡所得稅는 贈與稅로, 自耕農民은 營農子女로 한다.

제78條의 2(天然果實飲料등에 대한 特別消費稅免除) 農家所得의 增大를 위하여 特別消費稅法 第1條 第2項 第3種 第3號의 清涼飲料 중 천연과즙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이상 含有된 것과 同條同項同種 第7號의 天然果實飲料(果采類의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991年 12月 31일까지 特別消費稅를 免除한다.

◇ 租稅減免規制法 改正理由

1986年末까지의 限時法으로 되어 있는 租稅減免 規制法의 適用時限을 1987年부터 시작되는

第6次 經濟社會發展5個年計劃과 連繫하여 5年間 연장하는 한편, 특히 中小企業創業·技術人力開發·負債住宅建設·農漁村均衡發展등 重點施策을 稅制面에서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또한 中小企業의 事業轉換에 대한 稅制支援制度를 마련하며, 農漁民과 庶民의 財產形成을 支援하기 위하여 農·水·畜協등에 대한 預託金·出資金의 非課稅範圍를 擴大하려는 것임.

◇ 主要骨子

가. 租稅減免規制法의 適用時限을 1986年末까지에서 1991年末까지로 연장함(法 第93條).
나. 中小企業創業의 지원에 관한 사항

(1) 農漁村地域에서 創業한 中小企業과 農漁村외의 地域에서 創業한 技術集約型中小企業에 대하여는

- 所得稅·法人稅를 創業年度와 그 후 3年間은 100퍼센트, 그후 2年間 50퍼센트 減免함(法 第15條)
- 財產稅를 創業후 5年間 減免하고, 取得稅·登錄稅를 創業후 2年間 50퍼센트 減免함(法 第84條 第2項·第85條 第2項·第85條의 2).

(2)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 또는 新技術事業金融會社에 대하여는

- 株式讓渡差益에 대해 法人稅를 免除함(法 第81條의 2).
- 投融資金額의 50퍼센트까지 投融資損失準備金을 積立時 損金으로 인정함(法 第54條).

(3)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 또는 新技術事業金融會社의 株主 및 投資組合의 組合員이 받는 配當에 대하여는 所得稅를 10퍼센트 分離課稅함 (法 第5條 第2項 및 第3項).

다. 技術人力開發의 지원에 관한 사항

(1) 技術開發準備金의 損金算入限度額을 外形의 1퍼센트에서 1.5퍼센트·내지 2퍼센트로 上向 調整하고, 특히 中小企業

은 여기에 500萬원을 추가 設定할 수 있도록 함(法 第16條 第1項).

- (2) 技術人力開發費 增加支出分에 대하여는 20퍼센트 稅額控除를 하고 4年間 移越控除를 허용함(法 第17條 第2項).
- (3) 國產機械類 開發 및 使用促進을 위하여 外國產機資材에 대한 投資稅額控除率을 6퍼센트에서 3퍼센트 내지 0퍼센트로, 一時償却率을 5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下向 調整함(法 第18條 第1項·第2項, 第43條의 2 第1項, 第72條 第1項·第2項, 第43條의 2 第1項).

라. 農漁村均衡發展의 지원에 관한 사항

- (1) 農工地區入住企業에 대하여는 創業中小企業과 같이 所得稅 및 法人稅를 減免함(法 第40條의 4).
- (2) 不在地主가 1986年末 현재 보유하고 있는 一定規模의 農地·草地·山林地를 自耕하는 弟兄姊妹等에게 讓渡 또는 贈與할 때에는 贈與所得稅 또는 贈與稅를 免除함(法 第67條의 6·第67條의 7).
- (3) 自耕하는 直系存屬의 營農 1子女에게 一定規模의 農地·草地·山林地를 生前贈與時 贈與稅를 免除함(法 第67條의 8).
- (4) 農家所得增大를 위하여 天然果實飲料 및 天然果汁이 含有된 清涼飲料에 대하여는 特別消費稅를 免除함(法 第78條의 2).

(5) 農漁民등의 融資書類에 대한 印紙稅 免除限度額을 融資金額 500萬원까지에서 1千500萬원까지로 引上함(法 第81條 第5號 但書).

마. 貸貸住宅建設의 지원에 관한 사항

- (1) 1986年 1月 1日이후 新築한 庶民用 住宅을 長期貸貸한 후 讓渡할 경우 讓渡所得稅를 貸貸期間이 5年 이상인 때에는 50퍼센트, 10년 이상인 때에는 100퍼센트

트 免除함(法 第67條의 4).

- (2) 企業의 社員用賃貸住宅의 新築에 대한 投資稅額控除對象들 50제곱미터(15坪) 이하에서 85제곱미터(25.7坪)이하로 擴大하고, 住宅을 購入하여 賃貸하는 경우에도 投資稅額控除를 適用함(法 第72條의 2 第1項).

바. 海外事業의 지원에 관한 산항

- (1) 海外事業과 관련하여 外國에서 납부한 稅額에 대하여는 稅額控除의 方法과 損金算入의 方法중 企業이 選擇한 方法에 의한 혜택을 받도록함(法 第28條의2).
(2) 海外投資損失準備金의 設定限度額을 海外投資金額의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引上함(法 第29條第1項).

사. 올림픽事業의 지원에 관한 사항

- (1) 組織委員會의 選手의 記者對아파트 分讓에 따른 特別附加稅等을 免除함(法 第67條의 5).
(2) 組織委員會의 作成文書에 대하여 印紙稅를 免除함(法 第81第14號).
(3) 財團法人 서울 障碍者올림픽 大會組織委員會를 公共法人은 전액 損金 인정함(法 第49條 第2項第5號 및 別表)
아. 農漁民등이 農水畜協, 信用協同組合 및 새마을금고등에 預託하거나 出資한 경우 利子·配當所得稅가 非課稅되는 限度額을 預託金은 500萬원에서 1,000萬원으로 出資金은 200萬원에서 500萬원으로 각각 引上함(法 第4條).

- 자. 製造業을 영위하는 中小企業이 業種轉換을 위하여 기존 工場을 讓渡하는 경우 讓渡差益에 대한 法人稅·特別附加稅 또는 讓渡所得稅를 免除함(法 第45條의2).

- 차. 工業發展法의 制定에 따라 종전의 重要產業에 대한 特別償却制度는 이를 廢止하는 대신 同法에 의한 合理化施設投資에 대한 支援方式으로 轉換함(法 第71條).

카. 都市再開發事業施行者의 分讓建物등에 대한 讓渡所得稅의 減免對象을 縮小하고, 또한 國民住宅외의 建築用地로 讓渡하는 土地에 대하여는 讓渡所得稅세를 50퍼센트 減免하였으나 이를 課稅對象으로 轉換함(法 第58條).

타. 商法의 改正에 따른 株式併合의 일환으로 종전의 株券을 5千원 이상의 새로운 株券으로 交替하는 경우에 印紙稅를 免除함(法 第81條第13號).

파. 韓國海運技術院 및 韓國가스公社등을 法人稅등에 대한 課稅特例의 適用을 받는 公共法人으로 추가함(法 別表).

◎ 法律第 3886號

草地法中改正法律

草地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에 第2號 및 第4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하고. 同條第5號중 “造成”을 “造成·營理”로 한다.

2. “飼料作物栽培法”라 함은 組飼料를 生產하기위하여 短年生作物을 栽培하는 土地를 말한다.
4. “草地의 轉用”이라 함은 草地의 形質을 變更하거나 草地의 이용에 障害가 되는 施設 또는 構造物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草地를 飼料作物栽培로 사용하는 것은 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第5條의2에 第6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 ⑥ 許可聽은 國土의 效率적 이용과 地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農林水產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草地造成의 適地를 調査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第2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을 準用 한다.

第5條중 “第5條의 2”를 “第5條의 2第1項”으로 한다. 第7條第1項중 “第5條의2”를 “第5條2第6項”으로, “草地造成地區”를 “草地造成을 위한 團地造成地區”로 한다.

第8條중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團地造成 地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및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團地造成地區”로 한다. 第15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5條의2 (私有未墾地 의 貸借造成)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團地造成地區에 속하지 아니한 私有未墾地를 貸借하여 草地를 造成하는 경우의 貸貸借關係에 대하여는 第14條第3項 내지 第8項 및 第15條의 規定을 각각 準用한다. 이 경우 “代理造成者指定日”을 “契約日”로 “代理造成者”를 “貸借人”으로, “代理造成”을 “貸借造成”으로, “代理造成者 또는 代理利用者”를 “貸借人”으로 본다.

第20條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山林法第8條의 規定에 의한 營林計劃變更의 認可, 同法第18條의 規定에 의한 保全林地 (國有林의 效율적 營理를 위하여 그 立地·林相 및 面積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國有林을 제외한다)의 轉用許可·同意 또는 協議, 同法第57條의 規定에 의한 保安林의 解除, 同法第61條의 規定에 의한 保安林解除의 告示와 통지, 同法第62條 (第5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伐採등의 許可

第23條의 題目 “(草地의 轉用)”을 “(草地의 轉用等)”으로 하고, 同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하며, 同條第2項중 “國家機關”을 “國家 또는 地方 自治團體”로 “農水產部長官”을 “同項各號의 구분에 따른 許可聽”으로하고, 同條에 第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① 이 法에 의하여 造成된 草地의 轉用을 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구분에 의하여 農林水產部長官이나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農林水產部長官이나 市·道知事が 위의 許可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機關에 設置된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1. 轉用하고자 하는 草地가 2個이상의 道에 걸쳐 있는 경우와 道가 직접 造成한 草地의 경우에는 農林水產部長官

2. 第1號외의 경우에는 市·道知事

③ 草地를 飼料作物栽培地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許可聽에 申告하여야 한다.

第25條중 “草地轉用許可” 및 第30條중 “草地轉用의 許可”를 각각 “草地의 轉用許可”로 한다.

第2條第6號, 第3條第2項, 第5條第1項第1號·第2號, 第13條第2項 및 第28條 중 “農水產部長官”을 “農林水產部長官”으로 하고, 第4條第1項·第2項 및 第26條第1項중 “農水產部”를 “農林水產部”로 하며, 第5條의2第1項·第8條第4號·第12條第5項 및 第22條第1項第1號중 “農水產令”을 農林水產部令”으로 한다.

附 則

①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 (貸貸借期間 및 貸借料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전에 團地造成地區에 속하지 아니한 私有未墾地를 貸借하여 草地를 造成한 경우의 당해 貸貸借의 期間(연장된 貸貸借의 期間을 포함한다) 및 貸借料에 관하여는 第15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14條第3項·第4項 및 第6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貸貸借期間의 만료시까지는 종전의 契約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 草地法 改正理由

草地를 效율적으로 造成·管理함으로써 單位當 生產性을 높여 農家의 所得增大를 도모하고, 草地造成의 節次를 簡素化하여 草地造成農家の 편의를 도모하며, 기타 現行規定의 운영상 나타난 未備點을 補完하려는 것임.

◇ 主要骨子

가. 農林水產部長官·서울特別市長·道知事·

市場 또는 郡守등 草地造成의 許可聽은 國土의 效율적 이용과 地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效율적 이용과 地域發展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草地造成의 適地를 수시로 調査할 수 있도록 함(法 第5條의2).

나. 一般私由未墾地를 貸借하여 草地를 造成할 경우 貸貸借當事者간에 貸貸借期間·貸借料등에 대한 合意가 成立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대한 일정한 基準을 정하고 있는 團地造成地區의 代理造成에 관한 規定을 準用하도록 하여 草地造成에 관한 規定을 準用하도록 하여 草地造成을 하는 貸借人으로 보호하도록 함(法第15條의2).

다. 許可聽으로부터 草地造成許可를 받을 경우에는 山林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山林聽長등의 保全林地의 轉用許可·同意 또는 協議(大統領令이 정하는 國有林 제외)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法 第20條)

라. 農林水產部長官의 草地轉用許可權을 草地가 2個이상의 道에 걸쳐있는 경우와 道가 직접 草地를 造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市·道知事에게 移讓하고, 草地에 飼料作物을 栽培할 경우에는 申告로만 가능하도록 함(法 第23條).

◎ 法律 第388號

農地賃貸借管理法

第1條(目的)이 法은 農地의 合理的 이용과 農業의 生產性을 높이기 위하여 農地의 貸貸借 등과 그 管理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農地賃貸借契約當事者의 權益을 보호하여 農家生活의 향상을 기하고 나아가 農民經濟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이 法에서 사용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農地”라 함은 田·畠 또는 果樹園 기타 그 法의 地目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 農作物의 耕作에 이용되고 있는 土地를 말한다.
2. “農家”라 함은 地帶主 또는 그 同居家族

이 農耕에 종사하여 生活하는 家口單位를 말한다.

3. “賃貸借”라 함은 農地의 所有者가 營農에 종사하는 상대방에게 그 農地를 사용·収益하게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貸借料를 支給할 것을 約定함으로써 成立하는 契約을 말한다.

4. “委託經營”이라 함은 農地의 所有者가 他人에게 일정한 보수를 支給할 것을 約定하고 營農作業의 전부 또는 일부를 委託하여 營農하는 행위를 말한다.

第3條(賃貸借契約의 方법)① 貸貸借契約은 書面에 의한 方法으로 하여야 한다.

② 貸貸借契約은 書面에 의한 方法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貸借料를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貸借料의 上限의 80퍼센트를 초과하여 정할 수 없다.

第4條(賃貸借契約의 申告) 貸貸借契約의 當事者は 그 契約을 체결한 날로부터 60日이내에 農林水產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地所在地를 관할하는 市長(區를 두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한다) 區聽長·邑長 또는 面長에게 당해 契約의 내용을 申告하여야 한다. 契約의 내용의 變動이나 第5條2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의 연장 또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契約의 更新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第5條(賃貸借의 期間)① 貸貸借의 期間은 3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多年性 農作物·連作忌避性 農作物 기타 특수성 있는 農作物의 경우나 徵集·疾病 기타 契約當事者간의 合意에 따라 이를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貸貸借의 期間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 貸貸借의 期間은 그 契約當事者간의 合意에 따라 이를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延長期間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第1項의 規定을 準用

한다.

③ 貸貸借의 期間의 第1項 또는 第2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보다 短期이거나 그 期間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同項의 規定에 의한 最短期間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第6條(賃借料)① 貸貸借의 上限은 農地의 生產性 및 農作物의 収益性과 地域實情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 地域별·農地等級별로 市(서울特別市 및 直轄市를 포함한다 이하이 條에서 같다.)·郡의 條例로 정한다. 市·郡은 條例를 정할 경우 미리 農地所在地를 관할하는 農地管理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② 第1項前段의 規定에 의한 賃借料의 上限을 초과하여 貸貸借契約을 체계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効力이 없다.

③ 賃借料의 支給方法 기타 賃借料의 支給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條(公課金등의 부담) 貸貸人과 貸貸人간의 貸貸借農地에 관한 公課金과 農地改良費 기타 費用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條(賃借料의 減免講求)① 貸借人은 貸借農地의 전부 또는 일부가 天災·地變 기타 自然災害등 그에게 責任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사용·収益할 수 없거나 그 収穫量이 현저히 減小한 때에는 貸貸人에게 賃借料의 減免를請求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賃借料 減免의 사유 및 基準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9條(調停)① 貸貸借의 當事者는 第6條의 規定에 의한 賃借料 또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한 賃借料의 減免 기타 貸貸借에 관하여 서로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農地所在地를 관할하는 農地管理委員會에 調停을

申請할 수 있다.

② 農地管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調停을 하기 위하여 그 委員중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人내지 5人の 委員으로構成되는 調停委員會를 둔다.

③ 調停委員會가 調停을 할 때에는 당해 貸貸借의 當事者 및 利害關係人の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調停委員會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의견을 들은 때에는 調停案을 作成하여 貸貸借의 當事者에게 제시하고 그 受諾을 勸告한다.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案이 貸貸借의 當事者의 變方에 의하여 受諾된 때에는 이를 당해 貸貸借의 當事者간에 체결된 契約 내용으로 본다.

第10條(契約解止의 제한) ① 貸貸借契約은 相對方의 同意없이는 當事者의一方이 이를 解止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려하지 아니하다.

② 貸貸借契約의 當事者의一方 또는 變方이 貸貸借를 解止할 權利를 保留하는 特約은 그 効力이 없다.

第11條(賃貸人の地位承繼) 貸借地의 讓受人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貸貸人の 地位를 承繼한 것으로 본다. 다만, 讓受人이 직접 營農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2條(契約의 更新) 貸貸人이 貸貸借期間 만료전 3月까지 貸貸人에 대하여 그 更新의 거절 또는 貸貸借條件의 變更의 뜻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期間이 만료된 때에 종전의 貸貸借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貸貸借한 것으로 본다.

第13條(賃借權의 讓渡 및 貸借農地의 轉貸의 제한) 貸貸人은 貸貸人の 同意 없이 賃借權을 讓渡하거나 貸借農地를 轉貸하지 못한다.

第14條(委託經營등) 農地의 所有者는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所有農地를 委託經營하거나 他人을 雇傭하여 營農할 수 없다.

1. 農地의 所有者가 農地가 所在하는 市(서울特別市 및 直轄市를 포함한다)·邑 또는 面의 管轄區域안에 居住하는 경우.
2. 通作距離·營農與件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한 基準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法令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경우.

第15條(農地營農委員會의 設置) ① 農地 및 그 賃貸借의 效用적인 管理를 위하여 市(區를 두지 아니한 市를 말한다. 이하 같다)·區·面에 農地管理委員會(이하 “委員會” 라 한다)를 둔다. 다만, 그 管轄區域안에 農地가 없는 市·區·邑 또는 面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農林水產部長官은 地域의 特性과 農地分布의 實態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로 인접한 2이상의 市·區·邑 또는 면에 하나의 委員會를 두게 할 수 있다.

第16條(委員會의 構成) ① 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副委員長 1人을 포함한 10人이상 40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② 委員會의 委員은 다음 各號의 者가 된다.

1. 관할 市·區·邑 또는 面의 長
 2. 관할 市長(서울特別市長 및 直轄市長을 포함한다) 또는 郡守가 委員會의 管轄區域인 市·區·邑 또는 面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이상 營農하고 있는 者중에서 위촉하는 5人이상 30人이내의 者
 3. 관할 市·區·邑 또는 面에 所在하느 農業協同組合 및 農村指導所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業關聯機關의 長이 추천하는 그任職員중 各1人
- ③ 委員長은 관할 市·區·邑 또는 面의 長이 되고, 副委員長은 委員중에서 互選한다. 다만, 第15條第2項의 경우에는 관할 農地의

面積이 많은 市·區·邑 또는 面의 長이 委員長이 된다.

④ 委員의 選任·解任과 委員會의 組織·會議 기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7條(委員會의 機能)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管掌한다.

1.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賃借料의 上限에 관한 審議
3. 기타 農地 및 그 委員會의 管理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第18條(經費補助) 國家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委員會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經費를 補助할 수 있다.

第19條(農地賣買의 확인) 農地改革法 第19條2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賣買證明을 발급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地所在地를 관할한 委員會의 委員2人 이상의 확인을 받아 市·區·邑 또는 面의 長에게 그 발급을 申請하여야 한다.

第20條(強行規定) 이 法의 規定에 위반된 賃貸借로서 賃貸人에게 不利한 것은 그 効力이 없다.

第21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 農지의 賃貸借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의 貸貸借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② 國有財產法 및 地方財政法에 의한 國·公有財產인 農地에 대하여는 第3條 내지 第5條 및 第7條내지 第12條의 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22條(適用의 特例) 農家가 農耕하는 農地 중 당해 農家와 世帶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世帶姓 또는 同居家族의 直系尊·卑屬 또는 配偶者의 所有로 되어 있는 農地는 第3條 내지 第14條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당해 農家의 同居家族의 農地로 본다.

第23條(罰則) 第1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委託經營하거나 他人을 雇傭하여 營農한 者는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貸借料의 上限을 基準으로 한 당해 農地面積의 貸借料에 상당하는 금액의 2倍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24條(罰則) 許偽 기타부정한 방법으로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확인을 받아 農地賣買證明을 발급받은 者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25條(過怠料) ① 第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는 2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農地를 관할하는 市·區·邑 또는 面의 長이 賦課·徵收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日 이내에 당해 市·區·邑 또는 面의 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義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市·區·邑 또는 面의 長은 지체없이 관할 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法院은 非公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판정을 한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義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는 地方稅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第28條(罰則適用의 制)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委員中 公務員이 아닌 委員은 刑法 기타 法律에 의한 罰則에 있어서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87年 10月 1日 부터 施行한다.

第2條(貸貸借申告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전에 체결된 農地貸貸借契約의 當事者는 書面에 의한 契約의 여부에 불구하고 그 契約의 내용을 農林水產部令이 정하는 期間이내에 農地所在地를 관할하는 市·區·邑 또는 面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경우에는 第3條·第5條 및 第7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내용으로 書面에 의한 契約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貸借料는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貸借料의 上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에 대하여는 第25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農地貸貸借管理法 制定理由

貸貸農地가 全體地面積에 비하여 차지하는 比率이 1950年 農地改革 당시에는 8퍼센트에 불과하였으나 1985年末 現在에는 30.5

퍼센트로서 그간 每年 增加되어 온 추세이고, 總賃借料도 5,095億원에 달하여 그것이 農村 經濟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實情이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農地制度의 개선이 시급히 요청되므로 同改善策의 一環으로서 農地 賃借의 적정한 管理를 위하여 憲法에 따라 農地賃借에 관한 基本的 사항을立法化하여 農地賃借當事者 雙方의 權益을 보호하고, 賃借農家の 過多한 賃借料의 부담을 輕減하는 동시에 農地의 合理的인 이용과 農業 生產性을 높이려는 것임.

◇ 主要骨子

- 가. 이 法의 適用對象인 農地를 田·畠 또는 果樹園 기타 法의 地目 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 農作物의 耕作에 이용되는 土地로 함(法 第2條第1號).
- 나. 賃借契約은 書面으로 하도록하고, 書面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法定賃借料의 80퍼센트를 초과하여 정할 수 없도록 하며, 契約當事者は 契約을 체결한 날로부터 60日 이내에 관할 市·區·邑 또는 面의 長에게 契約內容을 申告하도록 함(法第3條 및 第4條).
- 다. 賃借期間은 安定的인 營農을 위하여

3年이상으로 하되, 多年姓作物·連作忌避性農作物등 특수한 農作物의 경우와 契約當事者에게 徵集·疾病等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로 大統領令으로 정하도록함(法 第5條第1項).

라. 賃借料는 農民에게 過多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農地의 生產性, 農作物의 収益性 및 地域實情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上限을 地域별·農作物별·農地等級별로 市·郡의 條例로 정하도록 함(令 第6條第1項).

마. 이 法의 實効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農地所有者가 農地所在 市·邑·面의 管轄區域안에 居住하는 경우, 通作距離·營農與件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해당되는 경우 및 다른 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農地의 委託經營과 他人을 雇傭한 營農을 허용함(法 第14條).

바. 農地 및 農地賃借의 效率적인 管理를 위하여 市·區·邑 또는 面에 農地管理委員會를 設置·운영하도록 함(法 第15條 내지 第18條).

謹 賀 新 年

정묘년 새해아침

社團法人 韓國酪農肉牛協會
任職員一同